

- 2) 소규모 학교의 전공불일치과목 해소 기여
- 3) 교원인력 양성이 적은 과목의 담당 교사 충원 등 교원 수급의 탄력성 도모

④

## 관련 근거

- 가. 교육공무원법 제32조(기간제교원),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(기간제교원의 임용), 초·중등교육법 제22조(산학겸임교사 등),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(산학겸임교사 등),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(초임호봉의 획정),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,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,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(관련 규정 별첨)
- 나. 기간제교원 인력풀제 운영 방안 시행 [교육부 교원정책과-1765(2013.06.03.)호.]
- 다. 기간제교원 인력풀제 운영 시행계획[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과-7729(2014.06.02.)호.]
- 라. 경기도교육청 4세대 NEIS 기간제교원 인력풀 운영 안내[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과-22809(2023.9.12.)호.]

2

##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

①

### 공통사항

- 가. 대상 : 국·공립 초·중등학교 계약제 교원(사립은 별도)  
- 기간제교원 : 교육공무원법 제32조(기간제교원)  
- 강사, 산학겸임교사, 명예교사 : 초·중등교육법 제22조
- 나. 임용계약 : 표준계약서(서식 16, 17)에 따라 문서로서 계약기간 및 복무 등에 관한 임용계약을 체결  
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기관의 장이 계약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
- 계약사항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서 내용 외 사전약속, 구두계약 등에 따른 민원이  
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
- 다. 임용 상한연령: 62세 이내. (계약 종료일은 교육공무원 정년일 이내여야 함)  
- 계약제교원 임용 상한연령 완화 기준(2025학년도 한시적 적용)  
· 교육과정 운영상 임용(시간강사 포함)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1차 공고는 65세까지,  
2차 공고부터 70세까지 임용 상한연령을 정할 수 있음(임용기간을 기준으로 해당 연령까지 임용가능)  
· 교육과정 운영 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정규교원의 총 결원기간이 5일 이내에 채용되는 시간강사는  
1차 공고부터 예외적으로 70세까지 임용 상한연령을 정할 수 있음
- 라. 임용권자 : 학교장[단, 교육지원청 소속(전문상담순회, 특수순회, 교과순회전담교사)은 교육장]